

서울특별시마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 (안) 심사보고서

1998. 11. 7.

총무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10월 29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8년 10월 30일
- 다. 상정일자 : 제57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 ('98. 11. 7.)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이 은 규

가. 개정이유

- '98. 정기 재물조사결과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소요조회 기준을 조정하고, 소요조회의 실익이 없는 재활용불가 불용물품은 소요조회 기준에서 제외하여 물품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개정골자

-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사업소및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간의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을 종전에는 "취득단가 1천만원 미만의 물품" 에서 "취득단가 1천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의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조정 (안 제15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03조및 동법시행령 제12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98년도 정기재물조사결과에 따른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동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15조의 단서 규정인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사업소및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안에

있는 자치구에 대하여 행하는 불용품의 소요조회를 종전에는 “1천만원 미만 물품”에서 “1천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일부내용을 개정하므로써 불필요한 행정력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유남렬 위원) : 타시·도로부터 불용품 소요조회시 우리구에서 불용품을 소요 요청한 실적이 있는가 ?
- 답변요지(이은규 재무과장) : 아직 없었음.
- 질의요지(유남렬 위원) : 그렇다면, 우리구 불용품 소요조회에 대한 타시·도로부터의 불용품 소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
- 답변요지(이은규 재무과장) : 아직 없었음.
- 질의요지(정만직 위원) : 내구년한이 경과하였다 하여 아직 사용 가능한 물품을 불용처분하는 사례는 결국 예산을 낭비하고 또한 자원을 낭비하는 처사라 할 수 있는데,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 답변요지(이은규 재무과장) : 앞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품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 안 의 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1998. 10.

제 출 자 : 마 포 구 청 장

1. 제안이유

'98 정기 재물조사결과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을 조정하고, 소요조회의 실익이 없는 재활용불가 불용물품은 소요조회 기준에서 제외하여 물품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사업소 및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간의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을 종전에는 "취득단가 1천만원 미만의 물품"에서 "취득단가 1천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의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조정(안제15조제3항)

3.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97.12.13 법률제5454호)제96조,제100조
- 지방재정법시행령('98.7.16 대통령령제15836호)제114조 내지 제116조, 제122조,제123조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하고, 동조동항 단서 중 “1천만원 미만의 물품”을 “1천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5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사업소,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치구, 중앙행정기관, 직할시·도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1천만원미만의 물품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사업소 및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치구에 대하여 행한다.</p>	<p>제15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②(현행과 같음) ③ ----- ----- ----- 광역시 ----- ----- 1천만원미만 5백만원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 ----- ----- -----</p>